

**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**  
(정태호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1596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8.

발 의 자 : 정태호 · 이연희 · 김주영  
이학영 · 김태년 · 이광재  
윤후덕 · 이주희 · 안도걸  
정준호 · 이수진 의원  
(11인)

**제안이유 및 주요내용**

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창업기업,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,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 등을 세액공제 대상 출자로 인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벤처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·벤처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민간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 또한 창업 초기뿐만 아니라 스케일업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도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 대상기업의 업력요건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내국법인이 창업기업·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투

자대상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은 7퍼센트, 그 밖의 비수도권 지역은 6퍼센트, 그 외의 지역은 현행과 같이 5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,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출자의 업력요건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2제1항 및 제4항).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”을 “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출자지분”을 “출자지분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”으로 하며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출자지분”을 “출자지분: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“7년”을 “10년”으로 한다.

가. 취득일 현재 해당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: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7

1) 인구감소지역

2)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

나. 취득일 현재 해당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가목 외의 수도권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: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6

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: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 
의 100분의 5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  
례)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 
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3조의2(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)<br>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 법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<u>주식 또는 출자 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</u>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. | 제13조의2(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)<br>①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<u>해당 호의 구분</u><br><u>에 따른</u> -----<br>-----.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|
| 1. 창업기업, 신기술사업자,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<u>출자지분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<u>출자지분: 다음 각</u><br><u>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</u><br><u>가. 취득일 현재 해당 기업의</u><br><u>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</u><br><u>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</u><br><u>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:</u> |
| <신 설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<신 설>

<신 설>

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·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(이하 “창업·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”라 한다) 또는 벤처투자조합등(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)을 통하여 창업기업, 신기술사업자, 벤처기업 또는

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7

1) 인구감소지역

2)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

나. 취득일 현재 해당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가목 외의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: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6

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: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

2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

② · ③ (생략)

④ 제1항 각 호,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,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1. (생략)

2.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

⑤ ~ ⑦ (생략)

-----

-----출

자지분: 해당 주식 또는 출자

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10년

-----

-----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